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83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최민희・권향엽・김영환
김 현・노종면・박민규
오기형・이연희・이주희
이해민・이훈기・조인철
최혁진・한민수・홍기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신속한 도입과 활용이 곤란해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에 방송광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의 7가지의 방송광고 종류를 새로운 종류의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3가지 방송광고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또한 이로 인하여 향후 새롭게 도입되는 방송광고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7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을 “경우”로, “반드시”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과 이와 인접한 방송광고 시간에 반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류는”을 “유형은”으로,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를 “유형별 방송광고의 종류·허용범위·시간·횟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방송프로그램광고”를 “방송프로그램외 광고”로, “편성되는 광고”를 “편성되는 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등 방송프로그램 외부에 편성되는 광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접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간접광고가”를 “방송프로그램내 광고가”로, “간접광고 판매”를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간접광고”를 각각 “제5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한다.

2.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등 방송프로그램 내부에 편성되는 방송광고

3. 복합형 광고: 제1호 및 제2호 중 하나로만 분류하기 어렵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방송광고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방송광고 등 시청자영향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술발전과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새롭게 도입된 방송광고 종류로 인해서 시청자 권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평가 결과 새로운 방송광고 종류가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청자영향평가의 대상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조치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중 “간접광고”를 각각 “제73조제5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3條(放送廣告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73條(放送廣告등) ①-- 경우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과 이와 인접한 방송광고 시간에 반드시 -------------------------------.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유형은 --------------- 유형별 방송광고의 종류・허용범위・시간・횟수 ----------------------------------.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1. 방송프로그램의 광고 ---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 편성되는 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등 방송프로그램 외부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2.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등 방송프로그램 내부에 편성되는 방송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3. 복합형 광고: 제1호 및 제2호 중 하나로만 분류하기 어렵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방송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삭 제>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삭 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삭 제>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	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
⑥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제5항에 따른 간접광고가 제2항 및 제33조제1항의 심의규정과 제86조에 따른 자체심의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 방송프로그램내 광고가 ----------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판매 ----------.
⑦ 외주제작사는 제86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에 필요한 기간 전까지 방송사업자에게	⑦ ----------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 외주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⑧ ---------- ---------- ---------- ---------- ---------- ---------- ---------- ---------- ---------- 제5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 --.
<신 설>	제73조의3(방송광고 등 시청자영향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술발전과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새롭게 도입된 방송광고 종류로 인해서 시청자 권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평가 결과 새로운 방송광고 종류가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청자영향평가의 대상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조치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10의4. ~ 28. (생 략) ②·③ (생 략)	제108조(과태료)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 ---------- ---------- ---------- 제73조제5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10의3. ---------- 제73조제5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10의4. ~ 2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